

# 최신 판례 예규

## Marketing Tax consulting

주식 평가시 인위적 시세조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세조정행위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가로 평가함

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·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

재산세제과-330, 2022.03.10

### 질 의

-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

### 회 신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전 또는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·이후 각 2개월(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개월 또는 후 2개월, 이하 "평가기간"이라 한다) 동안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(시세조종행위 등의 사실·기간, 시세조종행위 등과 주가 상승 간 인과관계, 납세자가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)에는 평가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기간 중 해당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

서면법령법인-7339, 2021.12.30

### 질 의

- A법인은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
- 2021년 근로자복지 증진 목적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무상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\*을 구입하였음  
\*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임

### 질의

-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# 회 신

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(출자임원 제외)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,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시가 계산 시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(증여재산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)이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,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

서면자본거래-1249, 2022.03.28

■ 질 의

- 민원인은 K-OTC(장외주식시장)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2022년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예정이며, 수증자는 이를 양도할 예정임

질의

- K-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

■ 회 신

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0조 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(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)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,
2.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,  
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(재산세과-603, 2009.10.30.)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

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

사전법규소득-337, 2022.03.30

■ 질 의

- 갑(甲)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, 질의 법인은 '@@.@.@'. 갑에 대하여 임원고용계약의 해지통보 하였으나  
- \*\*\*\*노동위원회는 '@@.@.@'. 위와 같은 질의법인의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, 이에 따른 구제명령\*이 확정됨

\* 구제명령 내용 :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

- 한편, 질의법인은 갑의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'@@.@.@'. 갑에게 근로기준법 26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

질의

-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

■ 회 신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21, 2021.04.05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♣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21, 2021.04.05.

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